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1. 시행)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1.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등 마련(안 제6조, 제12조의 2, 제15조, 제16조, 별표8)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
- 2)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규정하고, 소방부분부장을 소방

감으로 규정함

- 4) 그 외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기준을
별표8과 같이 마련함

나. 조직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범위 부여(안 제4조)

- 통합특별시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준인건비에 초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근거 마련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
조, 제33조, 제34조, 별표2)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라. 기타 제도개선(별표6)

-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 설치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산정에”를 “산정과 자율범위의 적용대상,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

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으로, 담당관·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이나 담당관·과장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5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로,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4명)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1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2명)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세종특별자치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명, 이 중 1명은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국장)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정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명, 이 중 1명은 재난안전 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명)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인천광역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공무원	(2명,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명, 이 중 1명은 비상기획 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1명)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1명, 비상기획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별표 6 제2호의 “시·자치구의”를 “시·군·자치구의”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 담당 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기획 담당 실장 및 전라남도 기획 담당 실장은 이 영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 담당 실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보직자로 본다.

제3조(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과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총선거(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한다) 후 처음으로 선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이 영에 따른 1명의 보직자를 새로 임명할 때까지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보직자로 본다.

[별표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2명)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7명)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실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청의 담당관·과장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국가공무원법」 제 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명)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담당관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위 표에 따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4명의 담당관을 2급 또는 3급 실·국·본부장 밑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 실·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실·국·본부장 밑에 두는 과 중 일부를 소관할 수 있다.
5.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소장	과장·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업연구관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촌지도관

비고 :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장	과 장	교수요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 ·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부분부장	소방담당 과장	소방서장	소방서 과장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정	소방령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부장	과장(科長)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비고 :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부장 · 과장(科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지역본부 · 사업본부 · 사업소 및 출장소

○ 지역본부

장	과장 또는 담당관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사업본부 · 사업소

구 분	장	부 장	과장 또는 담당관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사업소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은 위 표에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본부의 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국·본부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업소의 장은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통합특별시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출장소

장	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합의제행정기관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6. 의회사무기구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전문위원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과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국장은 둘 수 없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

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생략)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 -- <u>산정과 자율범위의 적용대상,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조건) ① (생략)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	② -----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생략)

도-----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현행과 같음)

2.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3.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략)

<신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으로, 담당관·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이나 담당관·과장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그 밖의 시·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지사-----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 통합특별시 -----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
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
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
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
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
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
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
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
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

----- 통합
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합특별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⑦·⑧ (생략)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

-----.

--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

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3조(시정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

-----.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요구) ①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② -----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
다.

제34조(조직분석·진단 등)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
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
야 한다.

⑤ ~ ⑧ (생략)

-----, ---
----- 특
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제34조(조직분석·진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3